

2001. 9.

# 條例案審查報告書

1. 충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2. 충주시행정동우회육성지원조례안
3. 충주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주시리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주시사무의위탁관리조례안
6.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충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등중개정조례안
8. 충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충주시주택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
10. 충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總務委員會

# 조례안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조례안	제안일자	회부일자	상정일자	의결일자	제안설명
충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2001. 9. 5	9. 6	9.10	9.12	기능전환 기획단부단장
충주시행정동우회육성지원조례안	"	"	"	"	총무과장
충주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	"	"	"
충주시리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	"	"	"
충주시사무의위탁관리조례안	"	"	"	"	기획감사과장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	"	"	"
충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등중개정조례안	"	"	"	"	가정복지과장
충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6	"	"	"	환경미화과장
충주시주택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	"	"	"	"	"
충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 5	"	"	"	체육시설관리소장

## 2. 제안설명요지

### 가. 충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안

#### 1) 제안이유

주민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법적 제도적 장치마련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준칙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려고 함

## 2) 주요골자

-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은 읍.면.동장 및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시장이 정하며, 시설 등은 읍.면.동장의 요구에 의해 시장이 정하고, 재정형편 등으로 일시에 설치가 곤란한 경우 연차별 계획수립
- 자치센터는 읍.면.동장 책임하에 운영하고 민간위탁 및 사용료 징수 근거를 정하며, 주민의 이용과 선량한 이용자로서 의무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강사 및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보상 근거를 정하고, 연간 운영계획 및 운영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음
-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관한 심의 기구이며, 위원은 정해진 인원의 범위내에서 읍.면.동장이 위촉하고, 공무원은 위원장이 될 수 없음. 또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실비보상 근거를 정함.

## 나. 충주시행정동우회육성지원조례안

### 1) 제안이유

충주시행정동우회를 지원.육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행정과 시정발전에 기여하고 함.

### 2) 주요골자

- 충주시행정동우회 지원으로 시정발전에 기여 도모
- 주요사업으로는 시정홍보 사업, 지방행정발전과제의 조사.연구, 지역사회 현안문제의 의견수렴, 민원상담과 주요시책 자문, 충주사랑운동 실천을 위한 각종 사업추진, 기타 위 사항에 부대되는 사업과 본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행정동우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

## 다. 충주시리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개정조례안

### 1) 제안이유

교육부의 종합석차제도가 폐지되어 충주시 리통장자녀 장학생의 자격조항중 재적학년 석차를 폐지하고 장학금 지급정지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고 함.

### 2) 주요골자

- 장학생의 자격을 재적학년 석차제도를 폐지하고 리.통장으로 2년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타에 모범이 되는 자로 하며
-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장학금 지급을 정지토록 하였으나 타 장학단체의 장학금과 중복하여 지급 받았을 경우 지급을 정지하도록 개정

## 라. 충주시리통및반설치조례개정조례안

### 1) 제안이유

인구와 세대가 증가된 지역을 적정규모의 리.통.반으로 조정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행정서비스를 향상 시키고자 함

### 2) 주요골자

- 행정리 증설 : 3개소
  - 금가면 도촌리 도리마을을 분리하여 문화마을 증설
  - 이류면 대소리 대소2구를 분리하여 대소3구 증설
  - 이류면 만정리 독정마을 독정1구와 독정2구로 분리
- 행정리 폐지 : 3개소
  - 신니면 화안리 화석, 금가면 하담리 두담, 금가면 매하리 매하
- 반 조정 : 감 2개반
  - 증설 12개반, 폐지 14개반

## 마. 충주시사무의 위탁관리조례안

### 1) 제안이유

시장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다른 행정기관이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경우 그 절차와 기준을 정하고 위탁사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 시장의 사무중 위탁대상사무의 기준과 수탁기관의 신중한 선정을 위한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설치, 심의를 두도록 근거 마련
-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고 위탁(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과 처리명의 지휘, 감독권을 명확히 규정함.
-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 민원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함.

## 바.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

### 1) 제안이유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추진 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기 위해 개정함.

### 2) 주요골자

- 팀명칭을 자치센터기획팀으로하여 기획행정국 총무과 다음에 설치(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임)
- 주요업무
  -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읍.면.동 기능전환 업무추진 및 주민불편 해소

## 사. 충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등중개정조례안

### 1) 제안이유

법률 6024호에 의거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법률 6024호에 의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법률 6158호에 의거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이 장사등에관한법률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정.보완 하려고 함

### 2) 주요골자

- 충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의 개정
  - 생활보호대상자를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로
- 충주시화장장설치및운영조례의 개정
  - 생활보호법 제3조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로
- 충주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의 개정
  -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을 ⇒ 장사등에관한법률로

## 아. 충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중개정조례안

### 1) 제안이유

공동주택 등에서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는 경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에 따른 처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처리에 따른 처리수수료 징수를 위한 기준을 신설
  - 처리수수료 = (월봉투 환산량 × 5ℓ 종량제봉투규격 × 가구당 평균인원수) + 용지료 및 우편료

## 자. 충주시주덕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 조례중개정조례안

### 1) 제안이유

현실에 불합리한 규정을 삭제 또는 개정하여 사업장의 적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 수세식변소의 설치의무규정은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으로 이를 삭제하며
- 사업자에게 “재품생산량”의 제출요구는 오염물질 처리실태지도점검상 실효성이 적어 이를 삭제

## 차. 충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1) 제안이유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포괄적이고 모호한 규정을 개정하여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 객관적 기준없이 포괄적이고 모호한 규정을 삭제
  - “기타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자”
- 명확한 기준없이 모호한 규정 정비
  - 수탁자에게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수탁자가 체육시설관리를 소홀히 하여 경기장으로서 상태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공익상 필요하여 시가 직접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가. 충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안

- 읍·면·동 기능전환 방침은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 1단계는 도시지역 1,655개동을 2000년까지 추진 마무리하였으며
  - 2단계는 138개 시군 1,856개 읍·면·동을 2001. 11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는 행정자치부 지침이 2001. 6. 29일 시달되어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
- 충주시의 경우 주민자치센터 설치는 총 25개 읍·면·동 중 1읍 12개 동은 2001. 11월 말까지 나머지 12개 면은 2002. 12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그러나 사무·인력 조정은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관계없이 전 25개 읍·면·동에 대하여 2001. 11월 말까지 완료하여야 함.
- 사무조정은
  - 읍·면·동에 존치사무
    -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원, 복지, 주민안전관리 사무
    - 지역특성상 주민편의를 위해 존치가 필요한 사무
    - 국가정책상 반드시 존치 필요성이 있는 사무등
  - 시본청 이관사무
    - 규제, 단속등 읍·면·동 지역에 부적합한 사무
    - 업무성격상, 광역성, 전문성, 통합성이 요구되는 사무
    - 기타 시본청 수행이 가능한 일반행정 사무등
- 인력 조정은 유형별 존치 사무의 단위 사무별로 평균 소요 인력 합산 판단하여 조정하도록 되어 있음.
- 이에 충주시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안은 총 3장 24개 조문과 부칙으로 배열되어 있으며

- 제1장 총칙에는 목적, 정의, 원칙의 3개 조문으로 배열
- 제2장 주민자치센터에는 설치, 기능,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자원봉사자, 강사, 사용료, 이용, 주민참여, 수당, 보고의 11개 조문으로 배열
- 제3장 주민자치위원회에는 설치, 기능, 구성, 위원장의 직무, 간사, 해촉, 회의, 회의록, 실비보상, 시행규칙 등의 10개 조문으로 배열되어 있음.
  - 이중에서 제17조의 위원구성에 있어서 행정자치부 지침에는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명이상 25명 이내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충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에서는 입법예고결과 “15인이상 30인이하”로 구성해 달라는 주민의견이 있어 이를 받아들여 “위원은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내지 2인을 포함하여 15인이상 25인이하로 구성하고 단서에 인구 2만이상의 읍·면·동은 15인이상 30인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은 읍·면·동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이와 같이 주민자치센터는 읍·면·동사무소의 일부로서 그 운영, 관리는 읍·면·동장의 권한과 책임사항이나 주민자치위원회와 자원봉사자등이 중심이 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요망된다고 사료됨.
- 또한 제10조에서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 이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필요시에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용료의 요율은 조례로 정하여 징수하여야 됨이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명시되어 있음.
- 부칙에 충주시 읍·면·동 개발위원회조례의 제명은 충주시 면개발위원회조례로 개정하고 각 조문에 읍·동의 용어를 삭제하였음.

#### 나. 충주시행정동우회육성지원조례안

- 충주시행정도우회에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 이에 참고로 충주시의정회에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99년 8월에 제정한 바 있음.

#### 다. 충주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리·통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 교육부의 종합 석차제도가 폐지로 그 성격을 가늠하기 어려움이 따르므로 장학생의 자격을 리·통장으로 2년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 중에 품행이 단정하고 타에 모범이 되는 자로 개정하고
-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하여 타 장학단체의 장학금을 지급 받은 자에게로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라. 충주시리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금가면 도촌리 도리마을을 분리하여 문화마을을 증설한 것은 도리마을 내에 새로이 문화마을이 조성되어 세대 및 인구가 증가된 원인이며

- 이류면 대소리 대소2구를 분리하여 대소3구를 증설한 것은 '96년도에 한영아파트가 준공되어 228세대 612명이 증가된 원인과
- 이류면 독정리 독정1구와 2구를 분리한 것은 충주대학교와 극동정보대학 인근에 있는 독정리에 다세대 주택 건립으로 인한 인구증가가 원인임.
- 신니면 화안리 화석마을을 폐지한 것은 1982. 3월에 제7탄 약창 설치로 산정, 산안은 군부대로 편입되어 마을이 없어 졌으며 또한, 석포마을은 1996. 8월에 행정구역 변경으로 주덕읍 대곡리에 편입되었기 때문임.
- 금가면 하담리 두담마을과 매하리 매하마을은 공군부대에 편입되어 1998년에 주민들이 이주를 완료하였으므로 법정리는 존치하고 행정리는 폐하고자 하는 것임.
- 반 조정은 주민등록 및 행정리의 반폐지와 일치하지 않아 혼선을 초래하고 있어 법정리로 편성된 반을 행정리 단위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위와 같이 조정안에 대하여 2001. 8. 7일 의원간담회의 시집행부관계관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신 바 있음

#### 마. 충주시사무의 위탁관리조례안

-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제141조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어 이에 충주시사무의 위탁관리조례를 제정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것임.

- 조례는 총 15개 조문으로 배열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서 인용하여 제정한 것임.
-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수의계약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 위원회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 6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하도록 하였음.
- 시장은 수탁기관이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이에 예산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위탁기관”에 대한 용어의 정의가 없으므로 제2조 정의에 “위탁기관”이라 함은 자기의 권한을 위탁한 당해 행정기관의 “장”을 “2”호로 하고 “2”호의 수탁기관을 “3”호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제4조 제3항의 “별표”의 민간위탁사무는 이미 민간에게 위탁운영하고 있는 사무이며 그것을 합법화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 바.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에 따라 시본청으로 이관되는 사무, 인력 등을 조정하여 이관 사무처리체계 안정화와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한시기구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 그에 따른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관련 시본청 한시기구 정원 승인 사항이 충북도로부터 2001. 7. 5일 시달되었음.

#### 사. 충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등중개정조례안

- 충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의 인용한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호법으로 바뀜에 따라 현재 운영하고 있는 법문과 일치시키고자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임.
- 충주시화장장설치및운영조례도 위와 같이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며
- 충주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도 인용한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법률이 장사등에관한법률로 바뀜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며 제6조의(묘지 면적 및 시설) 조문의 문항 내용이 설명 없이는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움이 있어 이에 문항의 이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 아. 충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중개정조례안

- 공동주택 등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는 경우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항상 비치해 놓은 전용수거 용기에 배출하고 있어 이에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것으로 하는 산출기준을 마련 처리수수료를 징수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 **자. 충주시주덕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 조례중개정조례안**

- 현실에 불합리한 수세식 변소의 설치 의무도 없는 사항의 정비와 제품생산량 제출 없이도 용수사용량, 폐수량만 제출받어도 오염물질을 충분히 측정 가능하므로 이를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차. 충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객관적 기준이 없이 포괄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없는 모호한 규정을 정비하여 체육시설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 **4. 질의.답변.요지**

### **가. 충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안**

- ▶ 질의 : 문화동의 경우 건물은 1년후에 보수 또는 신축 할 수 있는지?
- 답변 : 일단은 계획대로 보수함이 바람직하다고 보면 신축 계획이 내년에 있다면 가능함.
- ▶ 질의 : 명칭을 굳이 선정할 필요가 있는지?
- 답변 : “면민의집”, “문화센타”등으로 자체 조정할 수 있음.
- ▶ 질의 : 실행후 주민불편이 예상됨.
- 답변 : 타 시군과 비교해서 사전 검토 대처 하겠음.

▶ 질의 : 읍·면·동과 자치센터와의 차이점은?

○답변 : 기존 읍·면·동에서 주민을 참여시키는 기능임.

▶ 질의 : 인력조정은?

○답변 : 행자부의 기준내에서 최대한 조정할 계획임.

▶ 질의 : 주민다수는 반대하는데 강행을 하는 사유는?

○답변 : 국비가 45%정도 되는 사항이며 주민에 불편을 최소화 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고자 함.

▶ 질의 : 기획단 구성 후 진행실적과 센터 설치후 사무실 변경 예산의 편성 시기와 면단위의 경우에도 금년 11월까지 인력조정을 하는지, 또한 2만이상의 해당동은?

○답변 : 기획단은 7월 21일부터 구성되 실태조사 및 시설견학을 하고 있음. 시설비 예산은 오는 3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며 11월말까지 모두 인력을 조정할 계획임 또한 연수동과 교현·안림동이 2만이상의 대상임.

#### 나. 충주시행정동우회육성지원조례안

▶ 질의 : 타 단체도 많은데 행정동우회만 지원하는 이유와 사업 또한 시와 중복되는 사례가 있는데 필요한지?

○답변 : 사단법인이며 290여명이 있으며 사업은 자문 또는 의견을 듣기 위함임.

▶ 질의 : 지금까지 동우회에서 지원받아 추진한 실적은?

○답변 : 없어서 지금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 질의 : 지원금의 한도액은?

○답변 : 사랑운동회란 단체는 없으며 사업예산을 정할 수 있는 규정은 없음.

## 다. 충주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증개정조례안

▶ 질의 : 리·통장으로 2년이상 근속한 자란?

○답변 : 현재 리·통장에 재직중인 자에 한함.

▶ 질의 : 선발 시기는?

○답변 : 매년 선발하고 있음.

▶ 질의 : 제8조 4항을 개정하는 것은 “장학금을 학비 이의의 목적으로 사용한때”를 삭제할 필요가 있는지?

○답변 : 현실적으로 확인이 되질 않기 때문에 불합리하여 삭제하였음

## 라. 충주시리통및반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 : “없음”

## 마. 충주시사무의위탁관리조례안

▶ 질의 : 제5조 수탁기관의 선정에서 수의계약시에는 심의를 거칠 필요 없다는 것인지?

○답변 : 수의계약도 심의를 거쳐야 함. 공개모집을 했는데도 응찰자가 없을 경우 수의계약 할 수 있음.

▶ 질의 : 심의위원회구성 시기는?

○답변 : 사업의 종류 성격 등에 따라 구성하며 선정이 끝나면 해산됨.

## 바.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 : “없음”

## 사. 충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등증개정조례안

▶ 질의 : “학업성적이 우수한자”란 평가 기준이 적당하지 못하다고 보는데?

○답변 : 제3항을 신설하여 보완하였음.

- 아. 충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증개정조례안 : “없음”
- 자. 충주시주택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  
조례증개정조례안 : “없음”
- 차. 충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증개정조례안 : “없음”

#### 4. 심사결과

- 가. 충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안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
- 나. 충주시행정동우회육성지원조례안 : 원안가결
- 다. 충주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증개정조례안 : 수정의결 [별지1]
- 라. 충주시리통및반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마. 충주시사무의위탁관리조례안 : 수정의결 [별지2]
- 바.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사. 충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등증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아. 충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증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 자. 충주시주택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 조례증개  
정조례안 : 원안가결
- 차. 충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증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6. 별 임

- 가. 충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안 1부.
- 나. 충주시행정동우회육성지원조례안 1부.
- 다. 충주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증개정조례안 1부.

- 라. 충주시리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 마. 충주시사무의위탁관리조례안 1부.
- 바.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 사. 충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등중개정조례안 1부.
- 아. 충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 자. 충주시주덕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 차. 충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별지1]

## 충주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충주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 한다.

안중 제11조 “2년이상 근속한 자”를 “1년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로 수정하고, “제8조 제1항 제4호”를 “같은조 같은항 제5호로”로 하며, 제4호는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로 삽입한다.

### <수정안대비표>

개정안	수정안
제2조(장학생의자격) 장학생은 리·통장으로 <u>2년이상 근속한 자</u> 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타에 모범이 되는 자이어야 한다.	제2조(장학생의자격) ----- ----- <u>1년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u> ----- ----- -----.
제8조(지급의정지) ① “생 략” 1.~3 “생 략” 4. <u>타 장학단체의 장학금과 중복하여 지급 받은 경우</u> <u>&lt;신설&gt;</u>	제8조(지급의정지) ①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4. <u>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u> 5. <u>타 장학단체의 장학금과 중복하여 지급 받은 경우</u>

[별지2]

## 충주시사무의 위탁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주시사무의 위탁관리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중 제2조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제2호는 “위탁기관이라 함은 자기의 권한을 위탁한 당해 행정기관의장을 말한다”로 삽입 한다.

### <수정안대비표>

제정안	수정안
제2조(정의) “생략” 1. “생략” <u>&lt;신설&gt;</u> 2. “생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u>“위탁기관”이라 함은 자기의 권한을 위탁한 당해 행정기관의장을 말한다.</u> 3. (현행과 같음)